



정부,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조치 시행

- 식약처,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유통질서 교란 행위 집중 단속
- 매일 주사기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을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공개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사기의 매점매석 등으로 인한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2026-73호)가 제정됨에 따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제조·판매업자 생산 및 반출물량 보고 명령 등 조치를 4월 14일 0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나프타의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필수 의료 제품에 나프타 공급을 우선 배정하여 주사기 등의 생산 물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유통 단계에서 가격 상승 및 공급에 대한 우려로 사전 물량 확보를 위한 ‘사재기’가 발생하면서 일부 온라인 판매점 품절 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사기의 매점매석행위를 통해 폭리를 취하거나 구매처간 비축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26.4.14.~ ’26.6.30)한다.

이번 매점매석행위 금지 대상 물품은 주사기와 주사침이며, 적용 대상은 주사기와 주사침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로, 주사기와 주사침의 제조업자·판매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과도하게 보관하거나 동일한 구매처에 과도하게 판매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기준 >

- ▲ (기존사업자) '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평균 판매량의 110% 초과 판매 행위
- ▲ (신규사업자) 제조·매입한 날부터 일정기간(10일) 내 판매·반환하지 않는 행위
- ▲ 동일 구매처에 대하여 '25.12~'26.2월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

매점매석 단속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식약처에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주사기 제조·판매업체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자는 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식약처 대표누리집(mfds.go.kr)' → 주사기·주사침 안정 공급 정보 → 신고센터

또한, 식약처는 주사기 수급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주사기 제조·판매 업체에 대하여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의 자료를 일 단위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 매일 공개함으로써 주사기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한다.

* (제조업자) 생산량, 판매(출고)량, 재고량, (판매업자) 판매(출고)량, 재고량 등 보고**

** 자료 미제출 등 명령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아울러,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상시적 주사기의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 하여 동일한 구매처에 주사기가 과다하게 공급되는 등의 매점매석행위가 예측되는 경우 단속반을 통해 조사하고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도 공유하여 유통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오유경 처장은 “주사기와 주사침은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치료를 위해 반드시 구비되어야 하는 필수 의료기기인 만큼 긴급하게 발동하여 추진되는 것”이라며, “위기 상황을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매점매석 등 위법 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 등을 통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매점매석행위 적발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붙임> 1. 주사기 생산·판매 실적 보고 및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2.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조치 시행(카드뉴스)
 3.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성홍모	(043-719-3752)
		담당자	사무관	정재용	(043-719-37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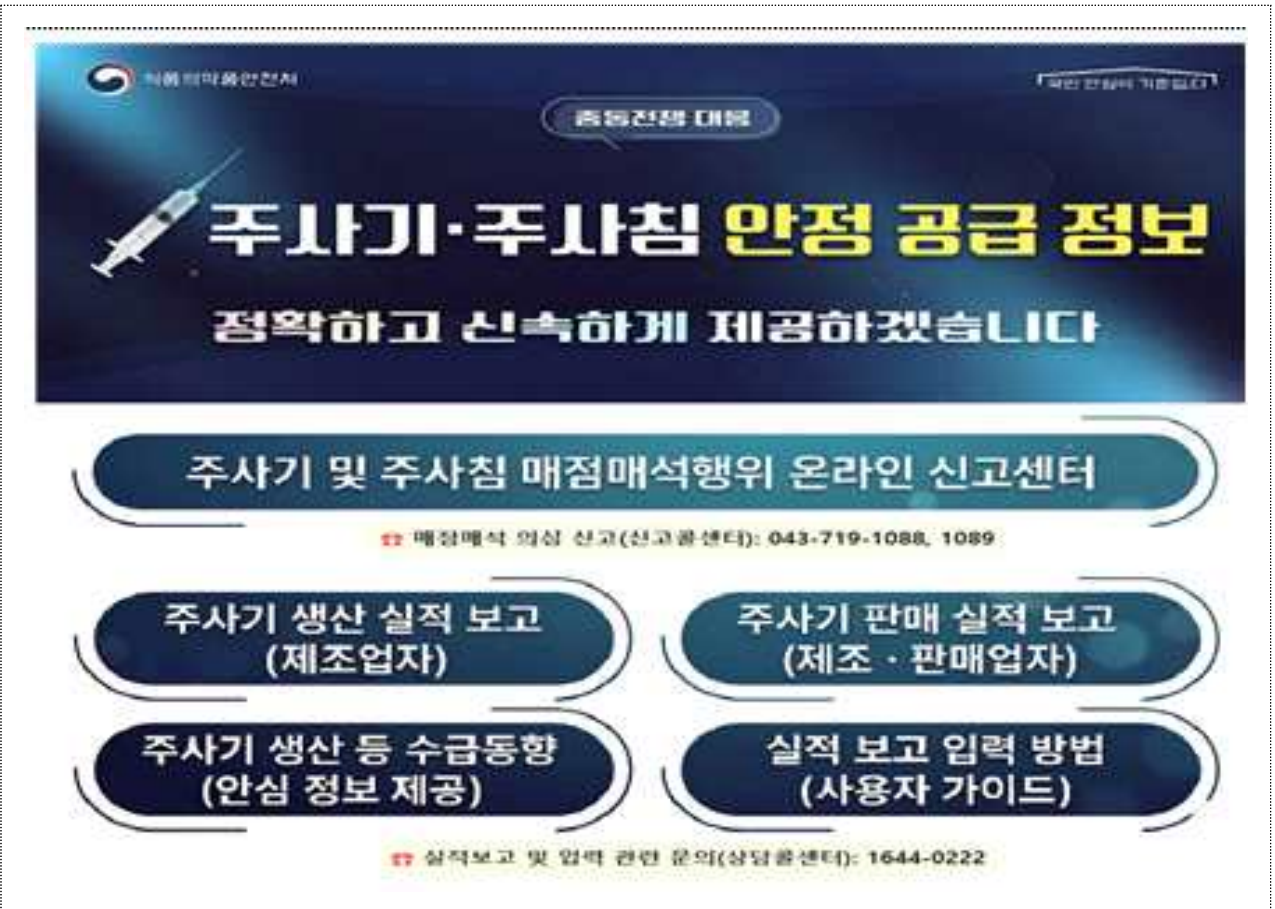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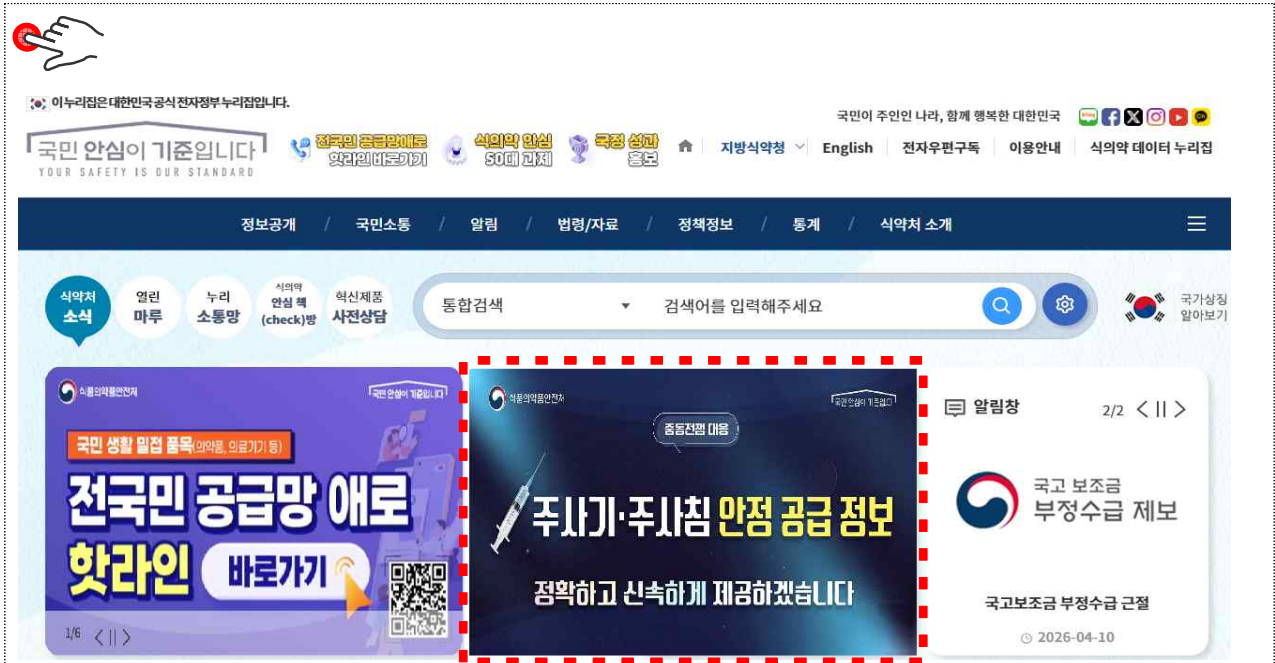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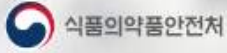
붙임 1

주사기 생산·판매 실적 보고 및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 (접속경로)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주사기·주사침 안정 공급 정보 > ① 신고센터, ② 생산실적보고, ③ 판매실적보고

*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043-719-1088,1089, (실적보고 상담콜센터) 1644-0222






국민 안전이 기준입니다



2026년 4월 14일부터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조치 시행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주사기 및 주사침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2026.4.14.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 법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 1. 적용기간** '26.4.14. ~ '26.6.30.
- 2. 적용대상** 주사기 및 주사침
 - 주사기: 주사기, 치과용주사기, 필터주사기, 인슐린주사기
 - 주사침: 비멸균주사침, 멸균주사침, 치과용주사침
- 3. 적용대상자** 주사기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주사침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 4. 매점매석행위 금지** 주사기나 주사침을 폭리를 목적
 - ① 과다 보유
 - ② 판매 기피
 - ③ 특정 구매처에 과다 판매 금지

매점매석행위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여 판매하는 등
다음의 경우에는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됩니다.

1. ('24.12.31. 이전부터 영업, 기존영업자)

- ① 조사 당일 기준 월평균('25.1.1~'25.12.31)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
- ② 월별 판매량이 같은 기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여 판매

2. ('25년('25.1.1.~'25.12.31.) 신규영업자)

- ①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
- ② 월별 판매량이 같은 기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여 판매


3. ('26.1.1. 이후 신규영업자)


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 또는 반환하지 않는 행위

4. (동일한 구매처)

동일한 구매처에 판매한 월별 판매량이 월평균('25.12.1~'26.2.28.) 판매량을 초과하여 판매. 다만, 동일 기간 판매량이 없는 구매처는 적용 제외됨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있나요?

 식약처는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제조, 판매 또는 반출량에 관한 자료 제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는 명령을 받은 물품의 실적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1. 제조업자 | 생산량, 판매(출고)량*, 재고량 *출고처 포함 |
| 2. 판매업자 | 판매(출고)량*, 재고량 *출고처 포함 |
| 3. 실적보고 | |

온라인

식약처 대표누리집(mfds.go.kr) 

‘주사기·주사침 안정 공급 정보’ 클릭


→ **(생산보고 시)** ‘주사기 생산 실적 보고(제조업자)’ 클릭


→ **(판매보고 시)** ‘주사기 판매 실적 보고(제조·판매업자)’ 클릭

유선

상담콜센터 ☎ 1644-0222

매점매석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식약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식약처와 지방정부(시·도) 합동 단속반을 운영합니다.

 매점매석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아래 누리집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센터

온라인
신고


식약처 대표누리집(mfds.go.kr) 

‘주사기·주사침 안정 공급 정보’ 클릭
→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클릭


전화신고

신고센터 ☎ 043-719-1088, 1089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위반한 경우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매점매석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명령을 받은 물품의 실적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73호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폭리를 목적으로 주사기 및 주사침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보건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의료기기법」 제2조 및 제3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A54010.01 주사기”, “A54050.01 치과용주사기”, “A54060.01 필터주사기”, “A54070.01 인슐린주사기”(이하 “주사기”라 한다)
2. 「의료기기법」 제2조 및 제3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A53010.01 비멸균주사침”, “A53010.02 멸균주사침”, “A53010.11 치과용주사침”(이하 “주사침”이라 한다)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주사기나 주사침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로 한다.

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 사업자는 주사기나 주사침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도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주사기나 주사침을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업자는 주사기나 주사침을 폭리를 목적으로 특정 구매처에게 과도하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 제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별 판매량이 같은 기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

2.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별 판매량이 같은 기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

3.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 또는 반환하지 않는 행위

4. 동일한 구매처에 대하여 월별 판매량이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 다만,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의 판매량이 없는 구매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 밖에 없거나 생산설비 신·증설 등으로 인한 생산량의 급증 및 가격·수요 동향과 같은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제6조(단속 및 보고) ①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주사기나 주사침의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각 시·도는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시·도의 단속실적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정례적으로 재정경제부에 통보한다.

제7조(판매 또는 반출 등 물량 보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제조, 판매 또는 반출된 물량에 관한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업자가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